

적립식예금 약관

제1조 【적용범위】

- ① 적립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저축금의 입금】

예금주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약정한 날짜에 월저축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4조 【이자】

- ① 이 예금의 월저축금을 매월 약정한 날짜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우체국은 입금일 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저축금 총액(이하 '원금'이라 한다)에 더한 금액(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만기지급금으로 지급한다.
- ② 이 예금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 ③ 예금주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우체국은 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빼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입금지연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을 늦출 수 있다.
- ④ 총선납일수가 총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우체국은 계약금액만을 지급한다.
- ⑤ 이 예금의 이자는 원을 단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이율로 계산한다.

제 5조 【만기도래전 지급】

- ① 월부금을 전회 납입하고 만기일(이연 만기일) 이전에 해약하는 것으로서 지연일수로 인해 만기일이 이연된 경우와 월부금 완납후 당초 만기일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일반 해약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② 만기도래전 해약지급이자액 계산시에는 중도해약 지급이자와 만기도래전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이자가 많은 것을 지급한다. 단, 약정지급이자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

제6조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

- ① 예금주가 만기일 후 지급청구한 때에는 만기지급금에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후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 ② 예금주가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한 때에는 월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 ③ 예금주가 만기일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에 청구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7조 【상속에 의한 특별중도해지】

저축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인은 우체국에 이 저축의 해지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우체국은 당초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 【자유적립식 예금 특례】

- ① 자유적립식 예금이란 계약기간동안 저축금을 달리하여 수시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 ② 자유적립식 예금은 입금 횟수에 관계없이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지급금으로 한다.
- ③ 자유적립식 예금에는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조,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법령위반시 처리】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예금에 있어서 예금주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입자격, 저축한도 등 거래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우체국은 임의로 그 예금을 해지하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이를 즉시 예금주에 통보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